

하도급 계약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.

당사자

원사업자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	
	주소		연락처	
수급사업자	상호(성명)		사업자번호	
	주소		연락처	

공사(용역) 개요

공사(용역)명		공사(작업)장소	
공사기간		도급금액	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(용역)의 시공·수행을 위탁하고, 수급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계약금액과 대금 지급)

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도급금액을 지급하며, 지급 시기·방법과 지급기일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대금은 수급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.

제 3 조 (선급금)

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, 받은 날로부터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비율의 선급금을 지급한다.

제 4 조 (설계변경과 대금의 조정)

설계변경,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다.

제 5 조 (검수)

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(용역)의 완료를 통지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.

제 6 조 (하자담보책임)

수급사업자는 공사(용역) 결과물이 계약 내용에 적합함을 보증하며, 하자가 발견된 경우 원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보수한다.

제 7 조 (안전보건)

수급사업자는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한다.

제 8 조 (부당한 특약의 금지)

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특약을 정할 수 없으며, 그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.

제 9 조 (지연손해금)

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
제 10 조 (분쟁조정)

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.

20 년 월 일

원사업자 : (서명 또는 인)

수급사업자 : (서명 또는 인)

※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며, 대금 지급기일 등 세부 기준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을 확인하십시오.